

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재해구호휴가 사용 알림

1. 관련근거

- 가. 재난구호휴가 부여관련 단체협약 체결(2016.6.3.)
- 나. 취업규칙 제54조(재해보상) 제2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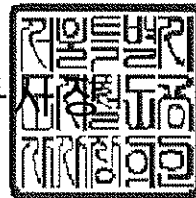
2. 재난·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재해지역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직원 가정의 안녕과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재해구호휴가 운영계획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

3. 해당 소속장은 대상자에게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휴가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대상지역 : 정부가 『특별재난지역』으로 지정한 지역
- 나. 부여일수 : 5일 이내(1회 한정, 분할사용 불가)
- 다. 사용기간 :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 1개월 이내(※ 해당기간 미사용시 소멸되며 별도 금전적 보상 없음, 전월 또는 이월 사용 불가)
- 라. 신청방법 : 근태정보-휴가신청-종별 '재난구호휴가' 선택, 결재상신
- 마. 사용방법 : 주간 또는 야간 구분없이 사용가능(※ 단, 야간근무일 사용 시 익일 비번 미발생)
- 바. 시 행 일 : 문서시행 즉시

붙임 : 재해구호휴가 시행계획 1부. 끝.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

수신자 나1~나43, 다1~다52, 라1~라3

과장 김상현

처장 10/10
최환영

협조자 부장 전역석

시행 인사처-7686 (2016.10.10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전화 02-6311-2199 전송 02-6311-4270 / 2020047@smrt.co.kr / 대시민공개